등록번호	감사담당관-@N
등록일자	
결재일자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주무관	조사팀장	감사담당관	부구청장

협 조	

민간위탁 청소년시설 운영실태 감사 결과보고

서 대 문 구

감사담당관

민간위탁 청소년시설 운영실태 감사 결과보고

민간위탁 청소년시설에 대하여 수탁기관 선정, 인력관리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하고자 함

Ⅰ 감사개요

▢ **감사근거**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체감사 규칙」

○ 민간위탁 청소년시설 운영실태 감사계획[감사담당관-8976(2022.9.23.)]

▢ **감사기간** : 2022.10.5.(수) ~ 11.9.(수)

▢ **감사대상** : 민간위탁 청소년 시설 5개소(1개부서)

연번	시 설 명	위탁부서	비 고
1	◇◇◇◇◇◇◇◇	♠♠♠♠♠♠	
2	◆◆◆◆◆◆◆◆◆		
3	☆☆☆☆☆☆☆☆☆☆☆☆		
4	★★★★★★★★★★★★★		
5	♤♤♤♤♤♤♤♤		

▢ **감사범위** : 2020.1.1. ~ 2022.9.30. 청소년시설 업무 전반

▢ **감사방법** : 서면, 시스템 및 실지감사 병행

▢ **감사인원** : 조사팀장 외 4명

▢ **중점 감사사항**

○ 수탁기관 선정 관련 절차 등 적정여부

○ 시설물 안전관리 및 인력관리 운영의 적정성

○ 협약사항·운영규정 준수 및 수탁기관 지도·감독 적정성

Ⅱ 감사결과

▢ 총 평

이번 2022년 민간위탁 청소년시설 운영실태 감사는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5개 청소년시설에 대하여 2020년부터 2022.9.30. 기간 중 ①수탁기관 선정 적정여부 ②예산·회계 업무처리 및 물품관리 실태 ③인력관리 운영의 적정성 ④협약사항 및 운영규정 준수 등 적정성 점검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서울시 민간위탁 감사에서 일부 기관에서 드러난 부정채용 등 불공정한 인사행태와 관행적·반복적 민간위탁으로 시설의 사유화 등 문제점이 지적되어 대대적으로 위탁사무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바, 서대문구 민간위탁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민간위탁 사무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감사결과 서대문구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다양한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주관부서의 지도·점검 아래 성실하게 위탁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민간위탁위·수탁협약서 미준수, 예산·회계 관련 규정 위반, 종사자 채용절차·방법 부적정 등 업무처리 부적정 사례가 지적되었다. 감사지적사항은 총 24건(주의 11건, 개선 7건, 통보 6건)으로 예산·회계, 인사관리, 위탁관리 등에서 각 분야에서 확인되었으며 주의 및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민간위탁관리 분야에서 사업계획서 변경 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사업이 종료된 후에 승인을 요청하거나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출 사전 승인 요청 시 제출기한 미준수 등 절차에 미흡한 사례가 있어 향후 관계부서에서는 수탁기관에 대한 절차 안내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위탁업무에 만전을 다할 필요가 있다.

인사관리 분야에서는 채용공고 내용과 다르게 종사자가 채용되거나, 면접심사표에 직무와 관련 없는 항목이 포함되는 등 지적사항이 확인되었다. 이에 채용관리 규정을 면밀히 확인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예산·회계 부분에서 대부분 규정에 맞게 처리되고 있었으나, 업무추진비 집행 절차 부적정, 강사료 원천징수 소홀 및 재정보증보험 미가입 등 회계업무 처리에 부적정 사례가 있는바 수탁기관에 대한 회계처리 교육 및 처리지침 안내를 통하여 투명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신규 수탁시설의 경우 규정·지침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지적되었으므로 관리부서에서는 위·수탁 체결 후 인사·노무 및 예산·회계 등 관련 규정 교육과 사업계획서 이행사항을 면밀히 점검하여 위반사항에 대해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조치계획

구 분	합계	징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	통보
합 계	24			11	6		7
◇◇◇◇◇◇◇◇	6			4	1		1
◆◆◆◆◆◆◆◆◆	2			1			1
☆☆☆☆☆☆☆☆☆☆☆☆	4			2	1		1
★★★★★★★★★★★★★	4			2	1		1
♤♤♤♤♤♤♤♤	1			1			
♠♠♠♠♠♠	7			1	3		3

▢ 시설별 지적사항

◇◇◇◇◇◇◇◇

지적사항 1	민간위탁 사업진행 및 예산집행 부적정

❖ 관련규정(원칙)

- 「구립 ◇◇◇◇◇◇◇◇ 위·수탁에 관한 양해각서」에 청소년센터의 입주 시기는 완공 3개월 전으로 하며 건축 일정에 따라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음
- 「2022년 ◇◇◇◇◇◇◇◇ 운영지원 계획(2021.10.7.)」 구청장 방침에 개관준비 TF인원 3명은 2022. 4월부터 근무하며, 그 외 실무직원 7명은 2022. 6월부터 근무하기로 계획함 ※ 위탁예정일 : 2022. 4월
- 「구립 ◇◇◇◇◇◇◇◇ 관리운영 위·수탁 계약 추진(2022.6.28.)」구청장 방침에 ◇◇◇◇◇◇◇◇ 준공예정일은 2022. 12월이며 위·수탁 계약은 2022.7.1.부터 추진함.

➲ 위반사항

- 입주시기는 완공 3개월 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수탁 계약은 2022. 9월 중에 체결되었어야 했으나, 2022.7.1.자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점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 공사 및 용역 준공 2회차 연기(2022.10.26.) : 공사(전기,통신 등) 2023.4.28.

- 개관준비를 위한 TF 인원 3명 채용(2022.7.11.)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개관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2022. 9월과 10월 추가 실무직원 7명 채용한 것과, 현재 직원이 10명이 채용되었음에도 직원 업무분장이 되지 않은 것, 기존 23개 사업계획을 신규 6개사업으로 2022. 11월 변경요청한 것으로 볼 때 무리하게 위·수탁계약 추진하여 인건비 등 불필요한 지출로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판단됨.

지적사항 2	종사자 채용절차 및 방법 부적정

❖ 관련규정(원칙)

-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 (여성가족부)」〔2.청소년수련시설 관리지도 업무 나. 종사자 관리〕 및 「◇◇◇◇◇◇◇◇ 인사규정」제2장 채용 및 근로계약의 제7조 (채용원칙)에 따르면 시설종사자의 신규채용은 직위(직급)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직원채용 공고사항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위반사항

- 채용공고 3개분야에 각 3명을 채용하기로 공고하고 채용가능 대상자가 없는 분야에 다른 분야 지원자 중 차점자를 채용하거나 채용공고 상 응시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채용
- 직무수행과 관련없는 '인상' 항목이 면접 배점표에 포함되었으며, 지원서류에 미혼조건 사항이 포함

지적사항 3	사업계획서변경 절차 부적정

❖ 관련규정(원칙)

- 「◇◇◇◇◇◇◇◇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제6조(사업계획)에 **"수탁자"는 제1항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구"의 서면승인을 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서울시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얼」제1편 예산·회계 Ⅰ. 총칙 기본원칙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수탁사업의 **목적과 용도 및 예산, 사업계획에 따른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반사항

- 사업계획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사전승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사업종료 후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함

지적사항 4	사업계획서 내용 미비 및 사전승인 절차 미이행

❖ 관련규정(원칙)

- 「구립 ◇◇◇◇◇◇◇◇ 관리운영 위·수탁에 관한 양해각서」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업운영계획서를 비롯한 각종 필요 서류는 입주 45일 전까지 제출하며 '구'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에 "수탁자"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 "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운용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구 및 인력 운용계획에는 근로자의 채용·급여·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 위반사항

- 사업계획서에 **근로자의 채용·급여·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포함한 기구 및 인력운용계획이 작성되어 있지 않음**

지적사항 5	내부 인사규정 미준수

❖ 관련규정(원칙)

- 「서대문구립 ◇◇◇◇◇◇◇◇ 인사규정」제9장 제56조에 따르면 인사위원회에 대한 결의사항은 회의록을 첨부하여 과장의 결재를 득한 후 지체없이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반사항

- 채용공고를 실시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회의록 작성하지 않음

◆◆◆◆◆◆◆◆◆◆

지적사항 1	공사계약 절차 부적정

❖ 관련규정(원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제2절 계약심사대상 사업 2. 임의적 심사대상 사업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외에 심사대상 금액이나 심사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등으로 그 내용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계약심사 규칙」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제4호에 민간위탁금, 민간경상보조, 민간대행사업비, 민간자본보조, 교육기관·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사업으로 그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에 따라 1천만원 미만의 공사·용역의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반사항

- 2020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1천만원 이상의 5건 공사·용역 사업에 대한 계약심사를 받지 아니함

지적사항 2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사전승인 절차 소홀

❖ 관련규정(원칙)

- 「◆◆◆◆◆◆◆◆◆◆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제6조(사업계획)에 "수탁자"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 "구"에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반사항

- (◆◆◆◆◆◆◆◆◆◆) 2022년도 사업계획서와 2022년 세입·세출예산서(안)을 제출기한이 지나 제출함
- (♠♠♠♠♠♠) 2020년, 2021년, 2022년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에 관하여 승인 통보 내역없음

지적사항 3	시설장 임명관련 절차 일원화 필요

❖ 관련규정(원칙)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시설장 등의 임면)에 청소년시설에 시설장 1명을 두며,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임면하고, 그 밖의 종사자는 시설장의 제청으로 수탁자가 임면하다.
- 「구립◆◆◆◆◆◆◆◆◆◆규정집」 인사규정 제2장 채용 및 근로계약 제6조(채용) 관장은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고 서대문구청장에게 보고하며, 이외 직원은 관장이 임명하고 인사는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다고 규정되어있다.

➲ 위반사항

- 시설장 임면절차에 대하여 서대문구 조례와 시설 인사규정이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지적사항 4	민간위탁 절차 부적정

❖ 관련규정(원칙)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소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 선정은 서대문구 구보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있으며,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대문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반사항

- ♧♧♧♧♧♧♧♧ 업무는 「◆◆◆◆◆◆◆◆◆◆」 관리· 운영에 관한사무와는 별개 사업으로 '◆◆◆◆◆◆◆◆◆◆'에 지정하였다하더라도 별도로 추가된 사무에 대하여 서대문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2014.5.1.~ / 2017.5.1.~ / 2020.5.1.~ 재위탁 사업추진 시 서대문구의회 동의안에 ♧♧♧♧♧♧♧♧ 업무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있지 않았다.

☆☆☆☆☆☆☆☆☆☆

지적사항 1	프로그램 강사료 원천징수 소홀

❖ 관련규정(원칙)

▸ 「소득세법」제19조에 따라 특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의 경우(강의를 전문적·직업적으로 하는 경우의 강사료)에는 지급금액의 3%의 소득세와 소득세의 10%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또한 동법 제86조에 「소득세법」제127조(근로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반사항

▸ 2022년부터 2022년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강사료 **지급총액이 30,000원이하로 원천징수액이 1,000원 미만임에도 10건에 대해 원천징수·납부하였음**

지적사항 2	종사자 채용방법 부적정

❖ 관련규정(원칙)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위반사항

▸ ☆☆☆☆☆☆☆☆☆☆는 종사자채용을 위한 **면접심사 시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인상'항목이 면접 배점표에 포함**되어 있다.

지적사항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사전승인 절차 소홀

❖ 관련규정(원칙)

- 「☆☆☆☆☆☆☆☆☆☆☆☆☆☆ 관리운영 위·수탁 계약서」제6조(사업계획)에 따라 **"수탁기관"은 매년 11월말까지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고, "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반사항

- (☆☆☆☆☆☆☆☆☆☆☆☆☆) 청소년안전망, (학교 밖)청소년지원센터의 2022년도 사업계획서를 2022.1.7.에 제출하였으며, 청소년아지트 2022년도 사업계획서는 업무관리시스템에 접수된 사항이 없고, 청소년안전망, (학교 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아지트의 2022년 세입·세출예산서(안)는 제출하지 않았음
- (♠♠♠♠♠♠) ☆☆☆☆☆☆☆☆☆☆☆☆☆ 2022년 사업계획서에 대한 승인 통보를 하지 않음

지적사항 4	인사위원회 구성요건 부적정

❖ 관련규정(원칙)

- 「☆☆☆☆☆☆☆☆☆☆☆☆☆☆ 취업규칙」 제25조(인사위원회의 구성) 제3항 '위원회의 위원은 공무원, 민간전문가, 교수 등 다양하게 구성하며 단 외부위원(**지자체 및 수탁법인 등 관계자 제외**)은 1인 이상 반드시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반사항

- 외부위원은 자방자치단체와 수탁법인 등 관계자는 제외하도록 명시되어있으나 2022년 인사위원회 명단의 □□□□□□□□□□□ 관장 한도희위원은 수탁법인 ■■■■■■■ 관계자로, 인사위원회 구성이 부적정하다.

★★★★★★★★★★★★★★

지적사항 1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관련규정(원칙)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13조(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세출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원칙과 기준은 별표3(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위반사항

- 2022년 6월 서대문구청 ♠♠♠♠♠♠로부터 2021년 8월~12월에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 시 업무추진비를 집행 할 때 참석자 현황, 명수 등을 미기재한 사실에 대하여 향후 지출 시 세부내용을 기재하도록 현지지도를 받았으나,
- 금번 실시한 감사에서 지도점검 이후에 작성된 업무추진비 지출결의서를 살펴본 결과, 여전히 집행목적 및 집행대상 등 세부내용이 누락된 사실이 있음

지적사항 2	재정보증보험 미가입

❖ 관련규정(원칙)

- 「서울특별시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매뉴얼」**제1편** 예산·회계 **Ⅲ. 수입·지출**에 수탁기관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며, 수입원과 지출원 등 회계관계직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고,
- 설정시기는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이며, 보증기간은 1년으로 보험료의 재원은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반사항

- 최근 3년(2020년~2022년)간 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보험 가입을 누락한 사실이 있다.

지적사항 3	시설장 사전승인 절차 및 종사자 임면보고 절차 소홀

❖ 관련규정(원칙)

▸「★★★★★★★★★★★★★★관리운영 위·수탁 계약서」제14조(운영방법)에 의하면 ★★★의 운영책임자(시설장)는 **"수탁자"가 "구"에 사전승인을 얻어 임면하여야 하며, 종사자는 운영책임자(시설장)의 제청에 의해 "수탁자"가 임면하되 "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 위반사항

- (★★★★★★★★★★★★★) 2020. 8. 1. 채용된 시설장은 사전승인 절차가 아닌 채용보고의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2021. 8. 1. 임용된 시설장 임면에 대하여 사전승인 요청하지 않았으며, 종사자의 임면보고가 누락된 사례가 있음
- (♠♠♠♠♠♠) 2021.12.28. 수탁법인의 시설장 임면 변경 승인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승인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

지적사항 4	시설 운영규정 미비

❖ 관련규정(원칙)

▸「★★★★★★★★★★★★★★ 관리운영 위·수탁 계약서」제7조(사업의수행)에 의하면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구"의 승인을 얻어 비치하여야 한다.

➲ 위반사항

- 「★★★★★★★★★★★★★★ 정관(定款)」 상에는 운영위원, 임원, 청소년 운영위원회, 이사회에 관한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현 시설의 실정과 동떨어진 구성으로 채용, 복무, 회계처리 등 사무별 일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무편람 또는 운영규정 미비함

♤♤♤♤♤♤♤♤

지적사항 1	예산집행 부적정

❖ 관련규정(원칙)

▸ 「2021년도 서울시 청소년시설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임차료는 물건비-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에 해당하며, 편성대상은 토지, 건물 등 시설물 및 차량의 사용에 대한 임차료와 임차하여 사용함이 유리한 고가장비 등 반드시 필요한 장비에 한하여 임차료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 위반사항

▸ 장비의 임차료에 대하여 사무관리비가 아닌 공공운영비(시설장비유지비)로 2021.1.25. 이카운트(회계프로그램) 22,000원, 복사기임대료 110,500원, 정수기임대료 21,900원, 합계 154,400원을 부적정하게 지출하였음

♠♠♠♠♠♠

지적사항 1	시설장 채용 사전승인 절차 미이행

❖ 관련규정(원칙)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시설장 등의 임면) 청소년시설에 시설장 1명을 두며,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임면하고, 그 밖의 종사자는 시설장의 제청으로 수탁자가 임면한다.

➲ 위반사항

▸ 수탁기관(◇◇◇◇◇◇◇, ◆◆◆◆◆◆◆◆◆◆◆◆, ★★★★★★★★★★★★★ 채용결과에 대한 승인 통보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시설장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 조회 결과만 통보하였음

지적사항 2	위 · 수탁 협약서 협약내용 부적정

❖ 관련규정(원칙)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하며, 그 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반사항

▸ 위·수탁 협약서에 "수탁자"는 수탁재산(건물·공작물 및 중요한 기계기구)에 대하여 화재로 인한 재산손해 배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손해보험 또는 공제계약 원본을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에 제출하여햐 한다고 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여한다는 법령의 취지와 맞지 않음

Ⅲ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 감사결과 처분심의회 심의

○ **개최일시 : 2022. 12. 12.(월) 14:00~16:00**

○ **심의위원 : 6명(감사담당관 및 각 팀장)**

○ **심의내용 :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조치 양정 심의**

○ **심의결과 : 별첨**

▢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연번	관련부서(기관)	안건명	심의결과
1	◇◇◇◇◇◇◇◇	민간위탁 사업진행 및 예산집행 부적정	주의요구 (기관경고)
2	◇◇◇◇◇◇◇◇	종사자 채용절차 부적정	주의요구 (기관경고)
3	◇◇◇◇◇◇◇◇	사업계획변경 절차 부적정	주의요구 (기관경고)
4	◇◇◇◇◇◇◇◇	사업계획서 내용 미비 및 사전승인 절차 미이행	개선
5	♠♠♠♠♠♠	사업계획서 내용 미비 및 사전승인 절차 미이행	개선
6	◇◇◇◇◇◇◇◇	종사자 채용절차 부적정	주의요구 (기관경고)
7	◇◇◇◇◇◇◇◇	내부 인사규정 미준수	통보
8	◆◆◆◆◆◆◆◆◆	공사계약 절차 부적정	주의요구 (기관경고)
9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사전승인 절차 소홀	통보
10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사전승인 절차 소홀	통보
11	♠♠♠♠♠♠	시설장 임명관련 절차 일원화 필요	개선
12	♠♠♠♠♠♠	민간위탁 절차 부적정	통보
13	☆☆☆☆☆☆☆☆☆ ☆☆☆	프로그램 강사료 원천징수 소홀	주의요구 (기관경고)
14	☆☆☆☆☆☆☆☆☆ ☆☆☆	종사자 채용방법 부적정	주의요구 (기관경고)
15	☆☆☆☆☆☆☆☆☆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사전승인 절차 소홀	통보
16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사전승인 절차 소홀	통보
17	☆☆☆☆☆☆☆☆☆ ☆☆☆	인사위원회 구성요건 부적정	개선
18	★★★★★★★★★ ★★★★	업무추진비 집행 절차 부적정	주의요구 (기관경고)
19	★★★★★★★★★ ★★★★	재정보증보험 미가입	주의요구 (기관경고)
20	★★★★★★★★★ ★★★★	시설장 사전승인 절차 및 종사자 임면보고 절차 소홀	통보
21	★★★★★★★★★ ★★★★	시설 운영규정 미비	개선
22	♤♤♤♤♤♤♤♤	예산집행 부적정	주의요구 (기관경고)
23	♠♠♠♠♠♠	시설장 채용 사전승인 절차 미이행	주의요구 (기관경고)
24	♠♠♠♠♠♠	위·수탁 협약서 협약내용 부적정	개선